

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정례회 등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제안이유

지방자치법 일부개정(2007.5.17)에 따른 인용 조문 변경과 의정활동 강화 및 회기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연간 총 회의일수와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조정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코자 함.

2. 주요골자

가. 지방자치법 인용조문 변경 (안 제1,2,3,5조)

나. 연간 총 회의일수 및 임시회 회의일수 조정 (안 제3조)

○ 연간 총 회의일수 : 80일 ⇒ 90일(임시회 42일 ⇒ 52일)

다. 제1차 정례회 집회일자 조정 (안 제4조)

○ 제1차 정례회 집회일 : 매년 7월8일 ⇒ 6월20일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제47조

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의4

나. 참 부 : 부산광역시 구·군 의회 회의일수 현황

4. 검토의견

본 개정 조례 안은 사하구의회 의 연간 총 회의일수 조정과 제1차 정례회 집회 일자 변경에 관한내용으로

- 2007년 5월17일 일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인용조문 변경에 따라 「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정례회 등 회기운영에 관한조례」 중 일부 인용조문을 당연 조정하고
- 보다는은 의정활동을 위해 현재 연간 총 80일의 회의 일수를 90일로 10일 늘려 의원들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연구와 학습, 지역주민과의 알찬대화, 그리고 효과적인 현지조사 활동 등 의정활동의 범위를 넓히고 내실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
- 또한 전년도 집행된 예산결산안 승인 등 심의를 위해 관련조례에 의거 매년 7월8일 개최하는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은 그동안 운영결과 각종 안건의 심도 있는 심사와 집행부의 하절기 재해대책, 을지연습 대비 등 업무추진 일정과 상호 연계를 위해서는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어 6월20일로 변경 조정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의정활동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
- 관련법령 검토와 부산광역시 타 구·군의회 와의 형평성 등을 감안 비교한 결과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